2021년 HACCP 주요 정책방향

2021. 1.



식품의약품안전처

목 차

1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란

2 법적 근거

3 HACCP 인증현황

4 앞으로의 정책방향

5 관련법령 위반사례

1 HACCP(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이란

HACCP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은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시스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한다).

*(근거 법령)식품위생법 제48조 ~ 제48조의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제9조의4

HACCP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지침

식품안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권고되는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

HA
위해요소분석

Hazard Analysis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

+

CCP
중요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 요소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를 중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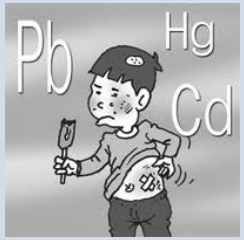
위해요소

화학적 요소

농약



중금속



항생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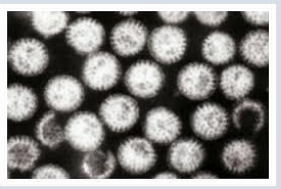


생물학적 요소

세균



바이러스



기생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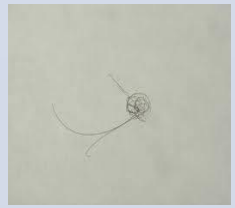


물리적 요소

쇠



머리카락



나무토막



2 법적근거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48조의2(인증 유효기간)
-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 ·평가 등)

동법 시행령

- 제3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동법 시행규칙

- 제6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
- 제63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 제6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 제65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 제67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
-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 제68조2(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식품 HACCP 제도연혁

’95. 1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적근거 신설 (식품위생법 제32조의2)
’96. 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식약청 고시) 제정
’02. 8.	의무적용 법적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제48조제2항)
’03. 8.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시행규칙) ①어묵류 ②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③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 비가열음료 ⑥ 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06.12 추가)
’05. 10.	6개 식품 의무적용 세부기준(적용시기) 마련 (식약청 고시)
’09. 2.	HACCP 지원사업 수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법적근거 마련
’12. 5.	HACCP 정기조사평가 차등관리제 도입 (식약청 고시)
’13. 12.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시 ‘과락제’도입 (식약처 고시)
’14. 1.	재단법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개원
’14. 11.	신규 의무적용 8품목 지정 (시행규칙)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초콜릿류 ④어육소시지 ⑤음료류 ⑥즉석섭취식품 ⑦국수·유탕면류 ⑧ 특수용도식품

식품 HACCP 제도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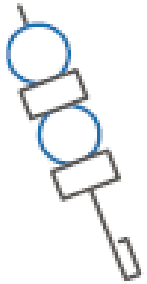
’14. 11.	HACCP 인증업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
’15. 8.	HACCP적용 부실업체 행정조치 강화(One-Strike-Out제 시행) HACCP 업체 정기조사 ·평가 결과 60점 미만 이거나 주요안전조항 ①원료 검수(검사) 미실시 ②지하수 살균·소독미실시 ③작업장 세척·소독 미실시 ④중요관리점(CCP) 관리 미흡 등
’15. 12.	검체 채취 규정 신설(식약처 고시)
’16. 2.	인증업체 3년 주기 연장심사제 도입(‘16.8 시행)
’16.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법(식품, 축산물 인증원 통합) 제정(17.2 개원)
’16. 4.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 (시행규칙 개정) ①순대(‘16 ~‘ 1 7) ②떡류(~17, ’10 인 이상)
’16. 8.	우수(95% 이상) 업체 자가품질검사 면제
’17. 1.	연장심사 신청서 등, HACCP종업원 교육 강화(85%이상 → 95% 이상 면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7.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식품 HACCP 제도연혁

’17.5.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및 신청절차 마련 - 당초 소규모 인증 업체가 연장심사 시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에 한하여 1년 이내 유예절차
’18.9.	전년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업체 유예 관련 고시 개정(제4조 4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2조제13호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 유예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가 신규로 식품유형 추가하려는 경우(의무적용 유형 추가하는 경우는 제외)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 해당연도에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
’19.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2019.12.30.) 1. 소규모 업소 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표 개선(별표 4) -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하도록 개선 - 청결·일반구역분리, 보관관리, 운반관리 항목을 추가하는 등 평가항목을 구체화함 2. HACCP 인증 평가 시 필수항목 도입 및 조사평가 미흡사항에 대한 감점 확대(별표 4) - 인증평가 시 HACCP 관리의 필수항목인 중요관리점(CCP) 결정, 한계기준 설정 등에 대하여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 -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위반사항이 당해 연도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감점의 2배 적용
’20.1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명시

식품HACCP 의무적용 현황

‘06.12.~‘12.12. 의무적용 완료



어묵류



냉동식품
(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즉석조리식품
(순대)

16.12 . ~ 17.12.
의무적용 완료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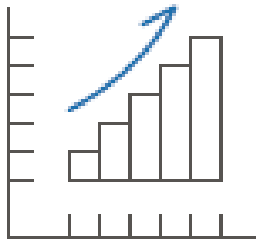
빙과류



배추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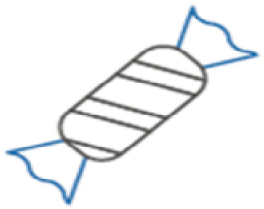
08.12 . ~ 14.12.
의무적용 완료

식품 HACCP 의무적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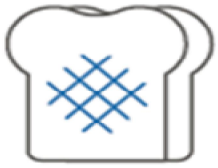


‘14.12.~‘20.12. 신규 의무적용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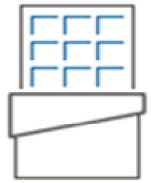
~ 17.12. 의무적용 완료



과자 • 캔디류



빵류•떡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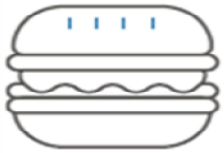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1단계 `13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51명인 업소(`14.12.01. 시행)

2단계 `13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21명인 업소(`16.12.01. 시행)

3단계 `13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수가 6명인 업소(`18.12.01. 시행)

(떡류의 2013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 2017년 12월 1일)

4단계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0.12.01 시행)

의무적용 시행 1년 유예
2020.12.01. ~ 2021.12.01.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 제9조 2(인증 유효기간)
- 제9조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 제9조 4(인증의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 · 운용 등)
- 제7조 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 제7조 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 제7조 4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 제7조 5(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 제7조 6(조사 · 평가의 방법 등)
- 제7조 7(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 제7조 8(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축산물 HACCP 제도연혁

’97. 12.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적근거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98. 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림부 고시) 제정
’01. 12.	의무적용 법적근거 마련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제2항) : 도축업(01~03)
’06. 10.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설립(사단법인)
’08. 6.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법적근거 마련
’13. 3.	축산물HACCP 업무 이관 (농식품부 → 식품의약품안전처)
’13. 7.	HACCP 용어변경(안전관리인증), 의무대상확대(집유업, 유가공업) 등 법 개정
’13. 10.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 평가표 분리, 점수제 도입(도축업, 축산물가공업)
’14. 6.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개정고시 - 고시명 및 용어 변경 : (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개정) 안전관리인증기준 - 안전관리통합인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평가표, 소규모 업소용’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표 신설 - HACCP 인증 심볼 개선(통합인증마크 및 안전관리통합인증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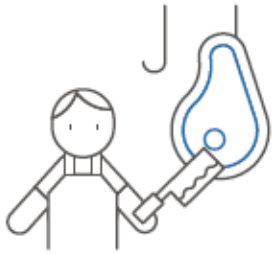
축산물 HACCP 제도연혁

’97. 12.	축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법적근거 신설 (축산물가공처리법제9조)
’98. 8.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농림부 고시) 제정
’15. 7.	HACCP적용 부실업체 행정조치 강화(One-Strike-Out제 시행)
’15. 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 (기존 개별 고시 폐지)
’16.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법률 제정(17.2월 시행)
’16. 4.	HACCP 의무대상 확대(알가공업)
’17. 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출범
’17.5.	HACCP인증 연장심사 유예 - 연장심사 시 소규모 → 일반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1년 이내 유예절차(시설설비 등의 개 보수가 필요한 경우 한함.)
’17.10.	닭·오리 농장 HACCP인증 및 사후관리 평가항목 명확화 - 동물용의약품(살충제 등) 자체 관리기준
’18. 4.	식용란선별포장업 시설 및 HACCP 의무화에 따른 평가표 마련,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신설 및 의무적용 확대, 압축공기 평가항목 명확화, 축산물 HACCP 사후관리 강화(HACCP 업체 불시 평가 도입, 수거 및 검사 실시 근거 마련)
’18.12.	식육가공업(의무1단계) 의무적용 확대

축산물 HACCP 제도연혁

’19.1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 고시(2019.12.30.) 1. 축산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표 개선(제5조 2항) – 축종(돼지, 소, 닭·오리)별 평가표의 중복 항목을 조정, 단일 평가표로 통합 – 동물용의약외품, 농약 등에 대한 관리사항을 모든 축종으로 확대 2.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소규모 기준” 적용 근거 마련(제5조 4항) – 소규모 기준을 적용(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 3. HACCP 적용 농장에 대한 우대조치 상화(제27조 2호) – HACCP 적용 농장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한 축산물의 경우 최종 제품에 농장의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0.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2020.04.07.) – 축산물 가공업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은 `20.10.8.~`21.10.7. 기간 이내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인증심사를 받아야함 – 대상: 식육가공업(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20.12.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하는 식육가공업의 영업자 범위 확대(제7조 3항) –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영업자 → 5억원 이상 영업자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현황



도축업
'02.6. ~ '03.6. 의무적용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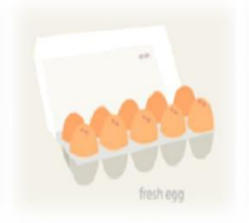
집유업
'14.7. ~'16.1. 의무적용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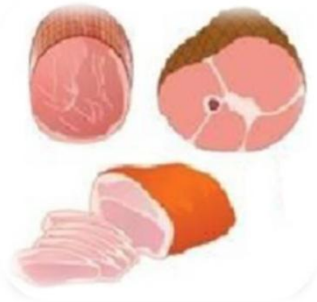
유가공업
'15.1. ~ '18.1. 의무적용 완료



알가공업
'16.12. ~'17.12. 의무적용 완료



식용란선별포장업
'18.4.~ 의무적용 완료
-기존 영업하고 있는 자는 시행('18.4.25.) 후 6개월 이내



식육가공업
1단계 :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인 업소(`18.12.01. 시행)
2단계 : `16년 매출액 5억원 이상인 업소(`20. 12.01. 시행)
3단계 : `16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업소(`22. 12. 01. 시행)
4단계 : 1~3단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24.12.0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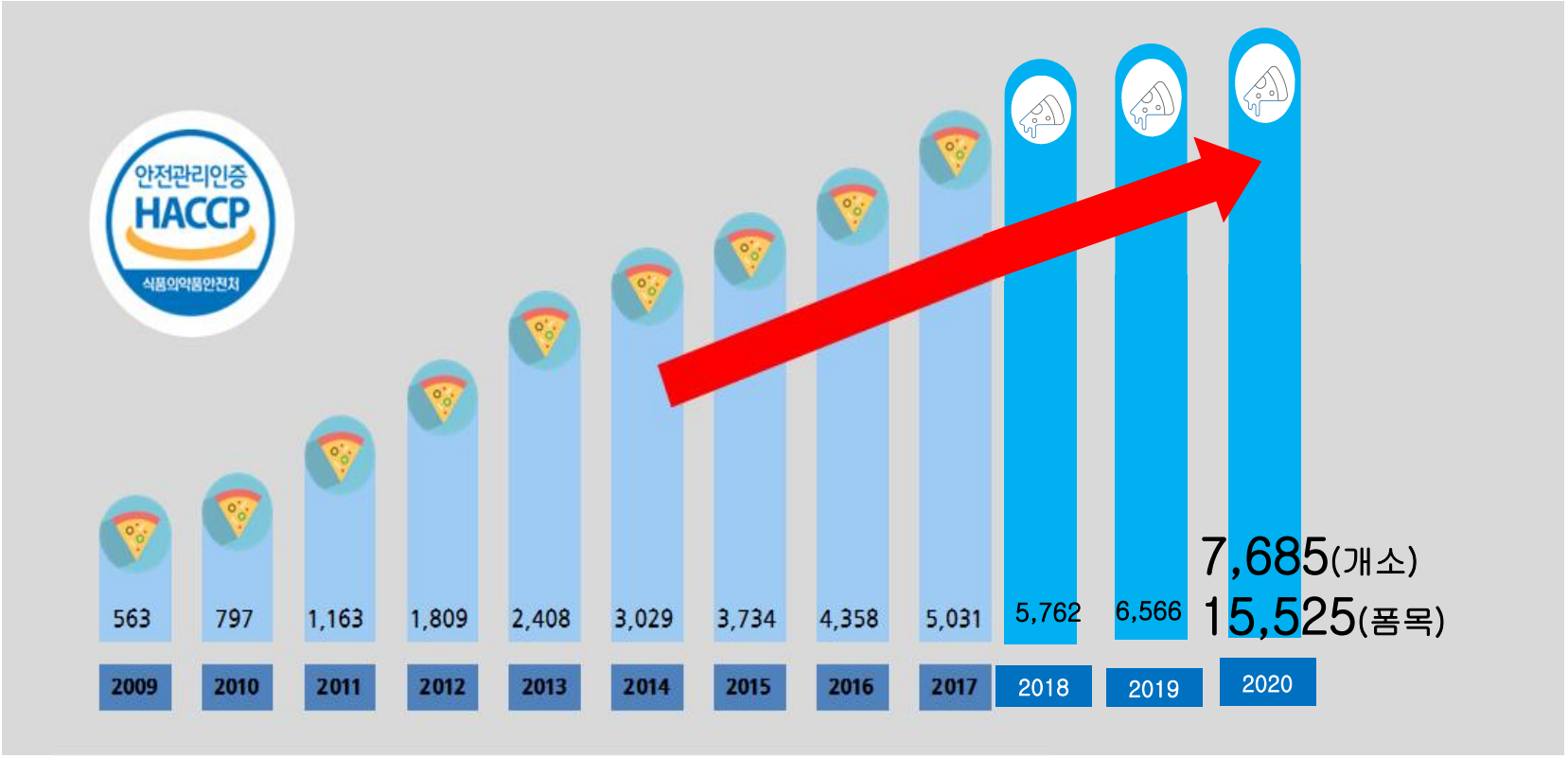
3 HACCP 인증현황

HACCP 인증현황(식품)

식품

15,525건, 7,685개소 인증('21.12.31.기준)

의무적용 7,650건(5,115개소) / 자율적용 7,875건(4,342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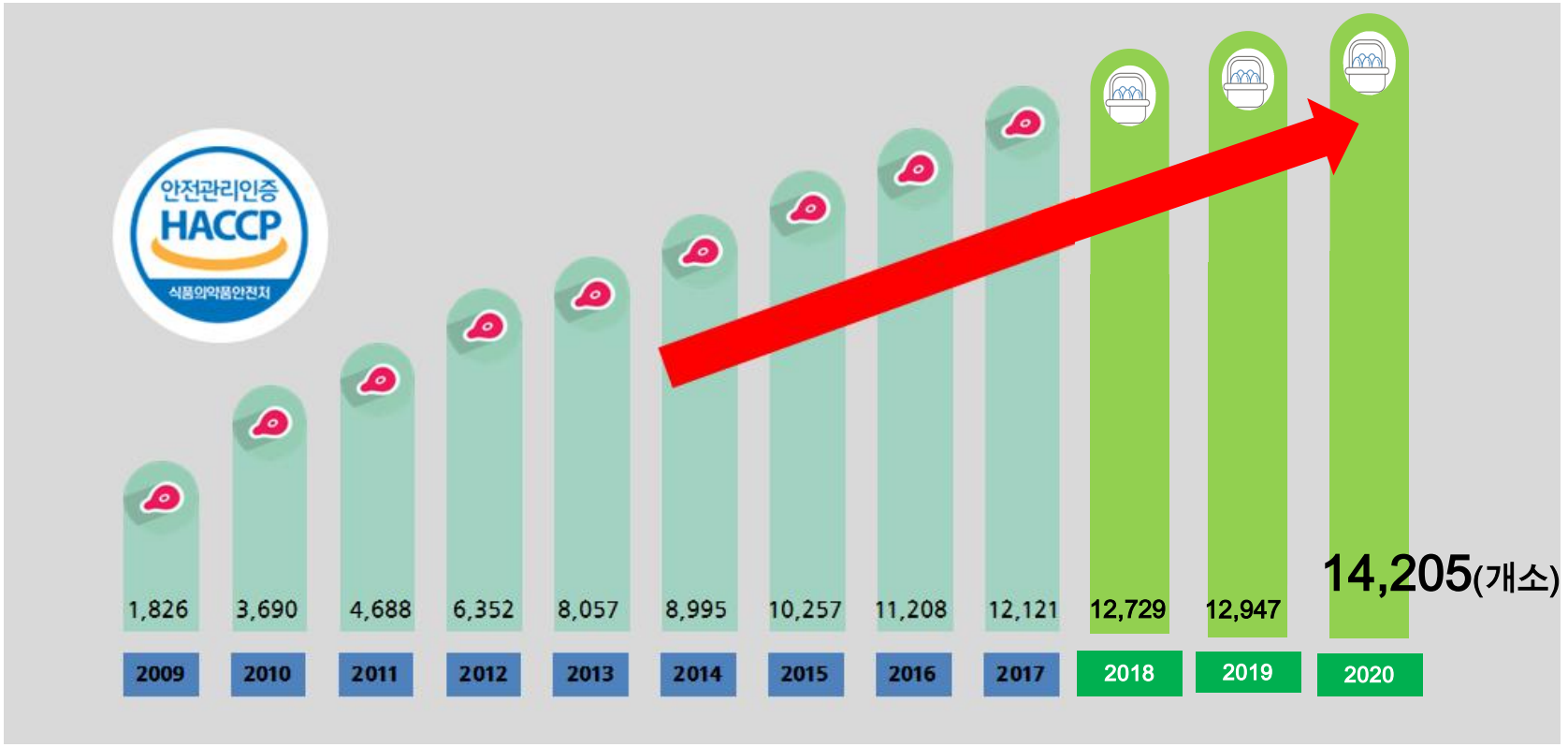
HACCP 인증현황(축산)

축산

14,205건 인증('21.12.31. 기준)

(가공업) 4,428개소, (유통업) 1,863개소, (가축사육업) 7,473개소, (사료) 225개소

(도축업, 집유업, 식용란선별포장업) 216개소



4 앞으로의 정책방향

HACCP 유예 기준 및 절차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유예대상** :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식품제조·가공업체(이하 100억 의무 업체)

※ 전년도 매출액이 식품제조·가공업 97억 + 유통전문판매업 4억으로 도합 100억원이 넘는 경우 100억 의무 아님(식품제조·가공업 전년도 매출액으로만 판정)

※ 100억 의무업체가 된 경우, 다음해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로 변경되더라도 계속 100억 의무업체에 해당됨

★ **유예기간** :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6개월 범위 내에서 의무적용 시기를 유예

★ **적용범위**

- 기존 HACCP 적용업소(100억 의무)가 신규 식품유형 추가하는 경우(의무적용 유형 제외)

  * 품목제조보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범위 내 유예 가능

-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되어 당해연도 신규 의무적용 대상이 된 경우

  * 생산실적보고 완료일 이전에 요청

HACCP 유예 기준 및 절차

HACCP 연장심사 유예(소규모→일반 전환)

★ **유예대상** :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체 중 “소규모 → 일반” 전환업체

★ **유예기간** : HACCP 연장심사 대상 업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는

1년 범위 내에서 연장심사 시기 유예

★ **적용범위** : HACCP 적용을 위해 시설·설비 개·보수를 위하여 일정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

식품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

★ **공포일** : 2016. 2. 3.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종전업체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인증받은 날이 3년 이상 경과 4년, 2년 이상 경과 5년, 2년 미만 경과 6년)

1. ~2013.8.3 이전 인증업체 : 2017.8.3 이전 재심사 대상(265품목,180업체)
2. 2013.8.4~2014.8.3 인증업체 : 2018.8.4 ~ 2019.8.3에 재심사 대상(87품목,55업체)
3. 2014.8.4~2016.8.3 인증업체 : 2020.8.4 ~ 2022.8.3에 재심사 대상(215품목,125업체)
4. 2016.8.4 이후 인증업체 : 3년 주기 재심사 대상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HACCP 인증 심사

(축산물 위생관리법 부칙 제17249호 참조)

★ **공포일** : 2020. 4. 7. , ★ 시행일: 2020. 10. 8.

'20. 10. 8. ~ '21. 10. 7. 기간 이내에 신청요건을 갖추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인증 신청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득하여야 함.

★ 대상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 식육가공업(1단계) : HACCP 의무적용 '18.12.1.시행, '16년 매출액 20억원 이상

★ 인 증 신 청

1. HACCP 교육 수료

① 영업자(4시간) 이수
② 종업원(24시간) 이수

1인 사업장은 영업자가 종업원 교육만 이수하여도 인정

→

2. HACCP 인증 신청

① HACCP 인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제공 동의서
② 허가증 사본 1부(앞/뒤)
③ HACCP관리기준서 사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인증 유효기간 갱신제도

축산물 HACCP 인증 유효기간 갱신

★ **공포일** : 2020. 4. 7.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종전업체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역산하여 인증받은 날이 3년 이상 경과 4년, 2년 이상 경과 5년, 2년 미만 경과 6년)

※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1단계), 알가공업, 유가공업), 2020.10.8 이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업체의 경우 '20.10.8 ~ '21.10.7 기간 이내 재심사

1. ~2017.10.8 이전 인증업체 : 2024.10.8 ~ 2025.10.7 연장심사 대상
2. 2017.10.8~2018.10.7 인증업체 : 2025.10.8 ~ 2026.10.7 연장심사 대상
3. 2018.10.8~2020.10.7 인증업체 : 2026.10.8 ~ 2027.10.7 연장심사 대상
4. 2020.10.8 ~ 인증업체 : 3년 주기 연장심사 대상

※ 예시) 2018. 6. 1. 인증 / 2018. 12. 1. 의무적용 시작 / 2020. 10. 8. 법 시행

→ '18.12.1. ~ '20.10.8. 로 해당 기간은 2년 미만으로 산정되므로 인증 유효기간은 6년 부여

즉시 인증취소 제도

즉시 인증취소(One-strike Out) 규정 시행

★ 주요 위생안전조항 1개 이상 위반 시 또는 평가점수 60점 미만일 경우

위생안전 조항 5개

- 원부재료 검수 미흡
- 지하수 살균소독 미흡
- 작업장 세척·소독 미흡
- 중요관리점 공정관리 미흡(모든 제품)
- 위해요소분석 미실시 (인증 이후 추가 생산 제품 또는 공정에 한함)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항목별로 차등 배점 (점수제)

1점 : 기준 설정 및 현장 확인
1점 : 현장 구비여부 확인
1점 : 관리 상황 확인

6. 작업장의 출입구에는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게시하여야 하고, 개인위생관리를 위한 세척, 건조, 소독 설비 등을 구비 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세척 또는 소독 등을 통해 오염가능성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0-3점)

1. 적절한 구역별 복장 착용 방법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작업장 출입구 세척, 건조, 소독 설비 구비 여부 확인
3. 관리 상황 : 온수공급, 출입인원 대비 시설충분 여부, 시설 배치, 시설의 청결 여부 및 파손 여부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 추가·변경(기존 15항목 → 3항목 추가, 1항목 이동)

작업장 구획	추가	2. 작업장은 청결구역(식품의 특성에 따라 청결구역은 청결구역과 준청결구역으로 구별할 수 있다)과 일반구역으로 분리, 구획 또는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작업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분리되어야 한다. (0~3점)
보관 관리	추가	15. 원·부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 등은 지정된 장소에 바닥이나 벽에 밀착되지 않도록 적재·보관하고, 교차오염 예방 및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0~3점)
운송관리	추가	16. 운반 중인 식품·축산물은 비식품·축산물 등과 구분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하여야 하며, 냉장의 경우 10℃이하(단, 가금육 -2~5℃ 운반과 같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냉동의 경우 -18℃ 이하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0~3점)
교육훈련	이동	(선행요건관리 → HACCP관리)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 [선행요건관리] 심사 시 중요관리 사항 관리여부 평가 반영

인증심사 (인증원)	필수항목 관리	평가항목 13번 지하수 용수관리, 14번 원부재료 입고관리 항목이 미흡(0점)일 경우 심사 부적합
조사평가 (지방청)	미흡사항 개선여부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 [HACCP관리] 평가항목 추가·변경

기존 평가항목	개정 평가항목
16. 중요관리점(CCP)을 결정하고, 한계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요관리점(CCP) 결정도(Decision tree)에 따라 CCP가 적절하게 결정되었는가? (5점)
	2.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한계기준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등 발생 시 기준을 적절하게 설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5점)
	3. 한계기준 설정을 위해 활용한 유효성 평가자료는 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가? (5점)
17. 모니터링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모니터링 담당자는 절차에 따라 지정위치에서 모니터링하여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10점)
18.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하거나 검.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모니터링 기구.장비 등은 매년 유지・보수 및 검・교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5점)
19. 한계기준 이탈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10점)
20. CCP)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	7.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관리상황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있는가? (5점)
	8.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5점)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 [HACCP관리] 심사 시 중요관리 사항 관리여부 평가 반영

인증심사 (인증원)	필수항목 관리	평가항목 1번, 2번 중요관리점, 4번 모니터링, 6번 개선조치 항목이 미흡(0점)일 경우 심사 부적합
조사평가 (지방청)	미흡사항 개선여부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의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감점 점수의 2배를 감점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실시상황평가표

`19년 개정

구분	선행요건 관리 배점 구성		
	3점	2점	1점
기준	1점	1점	1점
관리	1점	1점	
현장	1점		
감점	각 항목 중 미흡한 경우 1점씩 감점	기준 또는 관리·현장 중 미흡한 경우 1점씩 감점	하나라도 미흡한 경우 감점

구분	HACCP관리 배점 구성		
	0~5점	0~10점	비고
점수	5	10	모두 만족
	4	8	만족
	3	6	일부 미흡
	2	4	미흡
	1	2	재검토 필요
	0	0	
감점	기준 수립, 절차 및 방법, 기록관리, 개선조치 등 미흡 사항(미흡한 횟수)에 따라 감점		

실시상황평가표

소규모 평가표 점수 산정

`19년 개정

★ 선행요건관리 및 HACCP관리 각각 점수 산정

선행요건관리	17개 항목	총점 50점	'적합' = 43점 이상 '보완' = 35점 이상 ~ 43미만 '부적합' = 35점 미만
HACCP관리	8개 항목	총점 50점	'적합' = 43점 이상 '보완' = 35점 이상 ~ 43미만 '부적합' = 35점 미만

5 관련법령 위반사례

관련법령 위반사례

1. 이물혼입(기준 및 규격 위반)

★ 위반사례 : ① 화랑곡나방의 애벌레 혼입, ②세균수 기준치 초과,
③ 허용한 식품첨가물외의 식품첨가물 사용(안식향산나트륨 등)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행정 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법령
기생충(알), 금속(쇳가루 제외), 유리 등 이물 혼입	품목제조정지 7일 및 해당제품 폐기	식품위생법 제7조
칼날, 동물(쥐 등 설치류, 바퀴벌레 등)사채 혼입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기타 이물(쇳가루 포함)	시정명령	
소비자 신고 기록 미 작성(2년)	시정명령	
이물 발견 신고 지체 보고 및 미 보고	과태료(100,300만원)부과	

관련법령 위반사례

2. 건강진단, 위생교육

★ 위반사례 : ①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② 위생교육 미실시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40조 (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
- 「식품위생법」 제41조 (식품위생교육)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과태료의 부과 기준

행정 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법령
건강진단을 받지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	과태료 **20**만원	식품위생법 제**40**조 ※ 건강진단 실시 시기 ⇒ 검진일로부터 1년 마다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를 종사시킨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과태료 **20**만원	식품위생법 제**41**조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	과태료 **20**만원	

관련법령 위반사례

3. 식품등의 표시 광고 위반

★ 위반사례 : ① 내용량 허용오차 위반, ②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③ 영양성분 표시 위반(당류, 나트륨 표시량 대비 초과)
④ 다이어트 효과, 암치료 및 암예방 효과 등 허위 과대광고

관련 법령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표시기준)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5조 (영양표시)
- 「식품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행정 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법령
식품 등에 대한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표시 대상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4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중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정지 15일과 해당제품 폐기	
영양성분 표시 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5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실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8조

관련법령 위반사례

4.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위반사례 : ①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또는 그 원재료 사용,
②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 ③ 거래기록일지 미작성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행정 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법령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식품위생법 44조
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일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이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관련법령 위반사례

5. 자가품질검사 위반

★ 위반사례 : ① 자가품질검사 미 실시, ②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유통,
③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 유통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품질검사 의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 「별표 12」 (자가품질검사 기준)
- 「식약처 고시」 (식품 등의 자가 품질 검사항목 지정)

행정 처분



위 반 사 항	행정처분 기준	위반법령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의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개월	식품위생법 제31조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품목제조정지 15일	
자가 품질 검사 항목의 50% 이하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명령	
자가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해당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 등록 취소	
자가 품질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합니다!